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28 선고 2018가단3672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주식회사 D

3. 주식회사 E

4. 주식회사 F

5. G

6. H

7. I

8. J

9. K

변론 종결 2019. 1. 31

판결 선고 2019. 2. 28

주 문

연대하여 원고에게 4,688,715,226원 및 그 중 999,690,000원에 대하여 2008. 2. 1.부터 2008. 6. 10.까지 연 27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-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- 2. 법령의 적용
 - 가. 피고 주식회사 C, G에 대하여: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 - 나. 피고 주식회사 D, 주식회사 E, 주식회사 F, H, I, J, K에 대하여: 각 자백간주에 의한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제150조 제3항)

판사 이영풍

별지